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제724호 2019. 11. 13.[수]



기관의	장

고 시

제2019-127호 거창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지정·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3 제2019-128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79, 80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26 제2019-129호 단지봉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 28 제2019-130호 거창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30 제2019-131호 도로명주소 고시 ……… 33

공 고

제2019-1416호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96호선,주차장4호) 사업 실시계획
•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35
제2019-1419호	노인보호구역 지정(신규)에 따른 행정예고 37
제2019-1421호	남상 무촌지구 자동염수분사장치 CCTV 설치 행정예고41
제2019-1422호	「거창 정장마을(농도31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보상계획 열람 공고 44
제2019-1423호	「거창 정장마을(농도31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농어촌도로의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47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고 제2019-27호 거창 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수영강사) 채용시험 공고···49

l					
회 람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19 - 127호

거창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지정·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2011. 08. 19)로 농공단지계획 승인·고시되고 제2013-5호(2013. 01. 15), 제2014-85호(2014. 07. 25), 제2016-3호(2016. 01. 13), 제2016-42호(2016. 05. 4), 제2016-105호(2016. 10. 26), 제2017-61호(2017. 05. 17), 제2019-8호(2019.1.23.)로 변경승인·고시된 거창 승강기 전문농 공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제16조, 제19조,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과 (부분)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기에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거 창 군 수

1. 농공단지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거창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국내에서 유일한 승강기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신산업 지대를 구축하여 지역사 회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산업의 전략적 클러스터화
- 새로운 지식의 창출 및 기존 지식의 확산을 통해 지역 경제의 생산성 제고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일원

○ 면 적: 308,151.1㎡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 기 정 : 2009년 ~ 2017년 06월 30일(2017.07.19. 준공)

- 변 경 : 2009년 ~ 2020년 12월 31일

나. 개발방법(변경)

- 기정 : 민간개발

- 변경 : 민간개발(농공단지), 공영개발(배수지 신설, 송전철탑 이설)

5. 주요유치업종(변경)

	유 치 업 종	비 고
당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연구개발업(M70) 태양에너지 발전업(D35114)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변경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연구개발업(M70) 태양에너지 발전업(D35114) 교육서비스업(P85)	교육서비스업(P85) 추가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기정

·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 시 행 자 : ㈜산양종합개발 대표이사 이인식

○ 변경

가. 농공단지

·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 시 행 자 : ㈜산양종합개발 대표이사 이인식

나. 배수지, 송전철탑 이설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시 행 자 : 거창군수 구인모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생략:변경없음)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m²)	구성비(%)	비고
계획관리지역	308,151.1	100.0	-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m²)		그 서 비(%)	비고
구 분	기정	증감	변경후	구성비(%)	비 <u>가</u>
합 계	308,151.1	_	308,151.1	100.0	_
산업시설용지	192,103.5	증)446.0	192,549.5	62.5	-
지원시설용지	8,051.6	_	8,051.6	2.6	-
공공시설용지	107,996.0	감)446.0	107,550.0	34.9	-
도 로	50,986.4	_	50,986.4	16.5	-
주차장	3,125.6	_	3,125.6	1.0	2개소
송전철탑	1,107.6	감)346.0	761.6	0.2	송전철탑 3개소 중 1개소 변경
송전선로	(13,321.0)	감)2,623.0	(10,698.0)	(3.5)	중복결정
공원·녹지	41,686.7	감)100.0	41,586.7	13.6	-
공 원	12,792.0	_	12,792.0	4.2	근린공원(1), 소공원(1) 배수지 신설(중복결정)
녹 지	28,894.7	감)100.0	28,794.7	9.4	경관녹지 제척
저류지	11,089.7	_	11,089.7	3.6	2개소
배수지	-	증)252.0	(252.0)	(0.1)	배수지 신설 (공원내 중복결정)

다. 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없음)

가)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A 113	합계			1 류			2 류			3 류		
유별	노선 수	연장	면적	노선 수	연장	면적	노선 수	연장	면적	노선 수	연장	면적
중로	7	2,630	50,986.4	1	944	23,715.3	4	1,148	19,837.4	2	538	7,433.7

나)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규	足			+1 -1			11 A	7 4	-1 -	
구분	등급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1	50	22.5	보조 간선	944	중로 1-52호선	남상면 대산리 산65-3임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2	42	15	집산 도로	269	중로 1-50호선	중로 2-43호선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2	43	15.5	집산 도로	450	중로 1-50호선	중로 1-52호선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2	44	15.5	집산 도로	400	중로 1-50호선	중로 2-43호선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2	45	15	국지 도로	29	중로 1-50호선	완충녹지 16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3	53	12	집산 도로	401	중로 1-50호선	중로 1-50호선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3	54	12	국지 도로	137	중로 1-50호선	남상면 대산리 1380-10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2)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1	노외주차장	남상면 대산리 2433	1,345.5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 정	2	노외주차장	남상면 대산리 2387	1,780.1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3) 공원계획<mark>(변경)</mark>

	7 Ц	번호	o) ->)		면 적(m²)		최 초	비고
	구 분	빈오	위 치	기정	증감	변경	결정일	미끄
변경	근린공원	21	남상면 대산리 2385	12,220.3	_	12,220.3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배수지 중복결정
기정	소공원	30	남상면 대산리 2432	571.7	-	571.7	거창군 고시 제2017-61호 (2017.05.17)	

4) 녹지계획(변경)

	л н	טן ב	O) =1		면 적(m²)		최 초	nj –
	구 분	번호	위 치	기정	증감	변경	결정일	비고
기정	완충녹지	15	남상면 대산리 2372	2,431.2	감)100.0	2,431.2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
기정	경관녹지	16	남상면 대산리 2440	9,906.1	-	9,906.1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_
기정	경관녹지	18	남상면 대산리 2429	3,604.2	-	3,604.2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_
기정	완충녹지	19	남상면 대산리 2428	2,309.1	-	2,309.1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
기정	완충녹지	20	남상면 대산리 2415	5,312.5	-	5,312.5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
변경	경관녹지	21	남상면 대산리 2388	2,712.2	감)100.0	2,612.2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_
기정	경관녹지	22	남상면 대산리 2379	1,995.7	-	1,995.7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_
기정	완충녹지	23	남상면 대산리 2377	523.7	_	523.7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_

5) 상수도계획<mark>(변경)</mark>

가) 용수량(변경없음)

구 분	용수수요	.량(㎡/일)	비고		
十 七	기정	변경	H 17		
합 계	1,417	1,417			
공업용수	1,244	1,244	계획용수량 : 1,417㎡/일		
생활용수	173	173			

나) 수도공급설비(변경)

	구 분 위 치 -			면 적(m²)	최 초	비고	
	丁七	Π Λ	기정	증감	변경	결정일	υ <u>1/</u>
신설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85	-	증)252.0	252.0	_	공원내 중복결정

6) 하수도계획(변경없음)

구 분	오·폐수량(㎡/일)	비고	
합 계	940.3		
생활오수	801	계획오·폐수량 : 940.3㎡/일	
공업폐수	139.3		

7) 유수지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²)		최 초	비고
	丁 七	한모		기정	변경	결정일	비끄
기정	유수지	3	남상면 대산리 2420	8,271.6	8,271.6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
기정	유수지	4	남상면 대산리 2378	2,818.1	2,818.1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

8) 전기공급계획(변경)

가) 전력량(변경없음)

구 분	전력소요예상량(MWh/년)	비고
합 계	54,811	-

나) 송전철탑(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m²)		최 초	비고
	7 正	민오	T 7	기정	증감	변경	결정일	비ᅶ
변경	전기공급설비 (송전철탑)	2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88	446.0	감)346.0	100.0	거창군 고시 제2016-3호 (2016.01.13)	-
기정	전기공급설비 (송전철탑)	3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86	356.7	_	356.7	거창군 고시 제2016-3호 (2016.01.13)	_
기정	전기공급설비 (송전철탑)	4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94	304.9	-	304.9	거창군 고시 제2016-3호 (2016.01.13)	_

다) 송전선로(변경)

	7 Н	비슷			위	え		연장	면적	최 초
	구 분	번호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km)	(m²)	결정일
기정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5	거창군 월평리	남상면 산68	, , , –	남상면 949-10도	거창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0.905	13,321	(2016.01.13)
변경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5	거창군 월평리	남상면 산68	1	남상면 949-10도	거창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0.874	10,698	거창군 고시 제2016-3호 (2016.01.13)

9.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자금조달

○ 기정

- 사업시행자[(주)산양종합개발]

○ 변경

- ㈜산양종합개발: 농공단지

- 거창군 : 배수지 및 송전철탑 이설

나. 사업비내역

구 분	계	조사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간접비
기 정	30,416	1,191	19,214	8,030	1,981
변 경	32,216	1,256	20,889	8,030	2,041
증 감	증) 1,800	증) 65	증) 1,675	-	증) 60

다.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2017년	2019년~2020년
기 정	30,416	4,938	21,407	4,071	-
변 경	32,216	4,938	21,407	4,071	1,800
증 감	증) 1,800	-	-	-	증) 1,800

라. 세부사업비 내역

- 총괄(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백만원)		구성비(%)
	工	당초	증감	변경	7 8 H(70)
합	계	30,416	증) 1,800	32,216	100.0
	소 계	1,191	증) 65	1,256	3.9
조사설계비	측량비	218	증) 30	248	0.8
	설계비	973	증) 35	1,008	3.1
공시	/ 비	19,214	증) 1,675	20,889	64.9
보신	齐 _用	8,030	-	8,030	24.9
	소 계	1,981	증) 60	2,041	6.3
 간접비	감리비	640	증) 60	700	2.2
신엽미 	부대비	1,040	_	1,040	3.2
	시행관리비	301	_	301	0.9

- 조사설계비<mark>(변경)</mark>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실시계획 변경설계 및 처분계획	제평가 이 행	측량비	문화재지표조 사 및 시굴조사	기 타 조사비
당초	1,191	973	_	218	_	-
변경	1,256	1,008	_	248	-	-

- 공사비<mark>(변경)</mark>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량	=	상 액(백만원	旦)
] 正	一	당초	증감	변경
부지조성 공사	흙깍기:1,108천㎡, 흙쌓기:780천㎡ 등 차도포장:31,413㎡, 보도포장:11,471㎡ 우수관로:3,894m, 암거:147m 등 오수관로:2,440m 등 상수관로:2,571m(주철관), 3,752m(내충격수도관) 보강토옹벽:5,923㎡, 식생옹벽:2,521㎡ 조경시설: 1식	17,798	_	17,798
전기공사	가로등 : 1식	1,015	_	1,015
건설폐기물 처리	폐콘크리트 : 158Ton 건설폐재류 : 2,836Ton 혼합폐기물 : 195Ton	128	-	128
임목폐기물 처리	목폐기물 : 3,382ton	103	-	103
슬레이트 철거	석면 해체 및 제거 : 2,555㎡	132	_	132
수밀시험 및 CCTV검사	우수관로(∅450~1200mm) : 3,893m 오수관로(∅300mm) : 2,440m	38	_	38
배수지 신설	배수지 용량 : 300Ton	_	증)300	300
송전철탑 이설	신설철탑 : 관형주 3기 전선 : ACSR 97mm [®]	-	증)1,375	1,375
합계		19,214	증)1,675	20,889

- 보상비(변경없음)

구 분	보	보 상 비			비고
丁 正		당초	증감	변경	비 고
합 계		8,030	_	8,030	
용 지 보 상		5,333	_	5,333	군 선지급이자1) 포함
지 장 물 보 상		2,205	_	2,205	
영 농 보 상		260	_	260	
기타 보상비		14	_	14	
취 · 등록세		218	_	218	

(단위 : 백만원)

- 간접비<mark>(변경)</mark>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용 및 산정근거	Ħ	미용(백만원	<u>l</u>)
丁 正	대중 및 산정단기 	당초	증감	변경
	합 계	1,981	증) 60	2,041
감리비	감리비용	640	증) 60	700
	협약이행보증료(협약체결 협상시 견적협의) -민간사업자가 사업의 성실이행을 위한 보험료	78	-	78
	환경영향조사비(협약체결 협상시 견적협의)	300	_	300
부대비	사업타당성분석비(협약체결 협상시 견적협의) -재무모델작성 및 실시협약서 작성 등	30	_	30
	사업자문용역비	46	_	46
	분양대행 수수료(협약체결 협상시 견적협의) -분양가액의 기정 4.9%, 변경 약 2.5%	586	-	586
	금융부대비 기타	_	_	-
시행관리비	인건비 및 제경비(인건비의 35%)	301	_	301
건설이자	타인자본 대출이자	_	-	-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생략:변경없음)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유 치 업 종	부	지면적(m²)		원단위 'm².년)		사용량 h/년)
	기 정	증감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72,894.7	-	72,894.7	109	109	7,946	7,946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6] 전자부품 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59,535.2	-	59,535.2	532	532	31,673	31,673
[C26] 전자부품 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41,529.7	-	41,529.7	302	302	12,542	12,542
[P85] 교육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8,143.9	증)446.0	18,589.9	-	-	98	98
합계	192,103.5	증)446.0	192,549.5	_	_	52,259	52,259

나. 기타 시설용지(변경없음)

건 물 용 도	규 모	단위전력사용량	전력사용량 (MWh/년)
지 원 시 설	8,051.6 m²	210.6 kWh/㎡.년	2,270
도 로, 주 차 장	54,112 m²	1.25VA/ m²	213
교통신호등	67개	100VA/개	59
공 원	12,792 m²	0.25VA/ m²	10
합 계	-	-	2,552

12.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 적(m²))	구성비(%)	
T 正	기정	변경	변경후	T	
합 계	192,103.5	중)446.0	192,549.5	100.0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72,894.7	-	72,894.7	37.9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6] 전자부품 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59,535.2	_	59,535.2	30.9	
[C26] 전자부품 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41,529.7	-	41,529.7	21.6	
[P85] 교육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8,143.9	중)446.0	18,589.9	9.6	

13. 농공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생략:변경없음)

14.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계획관리지역	308,151.1	100.0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21	승강기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유통형)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일원	308,151.1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

다. 지구단위계획(변경)

1)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도로(변경없음)

■ 도로 결정(변경) 총괄 조서

A 13	합 계			1 류			2 류			3 류		
유별	노선 수	연장	면적	노선 수	연장	면적	노선 수	연장	면적	노선 수	연장	면적
중로	7	2,630	50,986.4	1	944	23,715.3	4	1,148	19,837.4	2	538	7,433.7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足			બ રો			λ1 Q	주 요	최 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	의 조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1	50	22.5	보조 간선	944	중로 1-52호선	남상면 대산리 산65-3임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2	42	15	집산 도로	269	중로 1-50호선	중로 2-43호선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2	43	15.5	집산 도로	450	중로 1-50호선	중로 1-52호선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2	44	15.5	집산 도로	400	중로 1-50호선	중로 2-43호선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2	45	15	국지 도로	29	중로 1-50호선	완충녹지 16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3	53	12	집산 도로	401	중로 1-50호선	중로 1-50호선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중로	3	54	12	국지 도로	137	중로 1-50호선	남상면 대산리 1380-10	일반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나)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1	노외주차장	남상면 대산리 2433	1,345.5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 정	2	노외주차장	남상면 대산리 2387	1,780.1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다) 공원<mark>(변경)</mark>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면적(㎡)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21	공원	그린 공원	남상면 대산리 2385	12,220.3	-	12,220.3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배수지 중복결정
기정	30	공원	소공원	남상면 대산리 2432	571.7	-	571.7	거창군 고시 제2017-61호 (2017.05.17)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1	공원	•배수지 중복결정 - 중복결정 사항으로 공원면적 변경없음	•거창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내 공업 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근린 공원 내 배수지 신설(중복결정)

라)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7	н	도면표시	기서머	시설의 위치		면 적(m²)		최 초	nj –	
구	분	번호	시설명	세 분	귀 시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남상면				거창군 고시	
기	정	15	녹지	완충녹지	대산리	2,431.2	_	2,431.2	제2011-60호	
					2372				(2011.08.19)	
					남상면				거창군 고시	
7]	정	16	녹지	경관녹지	대산리	9,906.1	_	9,906.1	제2011-60호	
					2440				(2011.08.19)	
					남상면				거창군 고시	
7]	정	18	녹지	경관녹지	대산리	3,604.2	_	3,604.2	제2011-60호	
					2429				(2011.08.19)	
					남상면				거창군 고시	
7]	정	19	녹지	완충녹지	대산리	2,309.1	_	2,309.1	제2011-60호	
					2428				(2011.08.19)	
					남상면				거창군 고시	
기	정	20	녹지	완충녹지	대산리	5,312.5	_	5,312.5	제2011-60호	
					2415				(2011.08.19)	
					남상면				거창군 고시	
변	경	21	녹지	경관녹지	대산리	2,812.2	감)100.0	2,712.2	제2011-60호	
					2388				(2011.08.19)	
					남상면				거창군 고시	
7]	정	22	녹지	경관녹지	대산리	1,995.7	_	1,995.7	제2011-60호	
					2379				(2011.08.19)	
					남상면				거창군 고시	
7]	정	23	녹지	완충녹지	대산리	523.7	_	523.7	제2011-60호	
					2377				(2011.08.19)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1	녹지	•완충녹지 면적감소 (A=2,812.2㎡→2,712.2㎡)(감100.0㎡)	•송전철탑 변경에 따른 경관녹지 축소

마) 수도공급설비(신설)

■ 수도공급설비 결정(신설) 조서

¬ н	도면	기거대	위 치		면적(m²)			최 초	нl च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신설	1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거창군 대산리		-	증)252.0	252.0	-	공원내 중복결정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1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거창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지방상수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근린공원 내 배수지 신설(중복결정)

바) 전기공급시설(변경)

■ 전기공급시설(송전철탑) 결정(변경) 조서

7	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 적(m²)		최 초	비고
구	匸	번호	기설명	T 1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끄
변	경	2	전기공급 설 비 (송전철탑)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23	446.0	감)346.0	100.0	거창군 고시 제2016-3호 (2016.01.13)	
기	정	3	전기공급 설 비 (송전철탑)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86	356.7	-	356.7	거창군 고시 제2016-3호 (2016.01.13)	
기	정	4	전기공급 설 비 (송전철탑)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94	304.9	-	304.9	거창군 고시 제2016-3호 (2016.01.13)	

■ 전기공급설비(송전철탑)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포 번	도시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2			•전기공급설비(송전철탑) 변경 - 위치: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88 일원 - 면적: 100.0㎡(감 346.0㎡)	•거창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내 토지이용 효율성을 감안하고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송전철탑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승강기 시험타워(높이125m) 건립 예정지 내 지장 송전탑 이설

■ 전기공급시설(송전선로) 결정(변경) 조서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HJ T
丁七	변호	기설명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km)	(m²)	결정일	비고
기정	5	전기공급 설비 (송전선로)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산68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20-2	거창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0.905	13,321	거창군 고시 제2016-3호 (2016.01.13)	
변경	5	전기공급 설비 (송전선로)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산68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20-2	거창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0.874	10,698	거창군 고시 제2016-3호 (2016.01.13)	

■ 전기공급설비(송전철탑)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5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변경 - 연장 : 0.905km → 0.874km(감0.031km) - 면적 : 12,627㎡ → 10,698㎡(감2,623㎡)	•송전철탑 위치변경에 따흔 송전선로 변경

사) 유수지(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3	유수지	저류시설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20	8,271.6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기정	4	유수지	저류시설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378	2,818.1	거창군 고시 제2011-60호 (2011.08.19)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산업시설용지<mark>(변경</mark>)

도면	가구	면 2	(m²)		Ž	획 지		
		기 정	변 경	위	치	면적	(m^2)	비고
번호	번호	-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192,103.5	192,549.5			192,103.5	192,549.5	_
				1	1	7,478.7	7,478.7	
۸.1	۸1	25 715 2	25 715 2	2	2	7,506.6	7,506.6	
A1	A1	25,715.3	25,715.3	3	3	6,492.7	6,492.7	
				4	4	4,237.3	4,237.3	
				1	1	3,215.8	3,215.8	
				2	2	3,569.8	3,569.8	
				3	3	3,569.9	3,569.9	
				4	4	3,570.0	3,570.0	
1.0	A2	22 010 0	22 010 0	5	5	3,649.8	3,649.8	
A2	AZ	33,819.9	33,819.9	6	6	2,976.3	2,976.3	
				7	7	3,520.1	3,520.1	
				8	8	3,537.2	3,537.2	
				9	9	3,481.3	3,481.3	
				10	10	2,729.7	2,729.7	
				1	1	5,219.5	5,219.5	
		22,932.5	2.5 22,932.5	2	2	5,147.3	5,147.3	
A3	A3			3	3	5,010.2	5,010.2	
				4	4 5	4,308.7	4,308.7	
				5		3,246.8	3,246.8	
				1	1	4,089.1	4,089.1	-1 n
				2	2	4,235.9	4,235.9	획지내
				3	3	4,252.9	4,252.9	필지
				4	4	4,252.7	4,252.7	분할·합병
				5	5	4,167.8	4,167.8	가능
				6	6	2,758.9	2,758.9	
A4	A4	49,962.2	49,962.2	7	7	3,941.2	3,941.2	
				8	8	4,230.8	4,230.8	
				9	9	4,252.9	4,252.9	
				10	10	4,252.9	4,252.9	
				11	11	4,239.7	4,239.7	
				12	12	2,690.0	2,690.0	
				13	13	2,597.4	2,597.4	
A5	A5	10,574.6	10,574.6	1	1	4,684.1	4,684.1	
ΛJ	ΛJ	10,014.0	10,014.0	2	2	5,890.5	5,890.5	
A6	A6	15,565.4	15,565.4	1	1	9,582.2	9,582.2	
AU	ΛU	15,505.4	10,000.4	2	2	5,983.2	5,983.2	
A7	A7	7,209.9	7,209.9	1	1	3,649.7	3,649.7	
111	111	1,400.0	1,203.3	2	2	3,560.2	3,560.2	
				1		4,480.7		
A8	A8	18,143.9	18,589.9	2	1	4,204.4	18,589.9	
110	710	10,140.0	10,000.0	3	1	4,729.7	10,000.0	
				4		4,729.1		
A9	A9	8,179.8	8,179.8	1	1	4,098.8	4,098.8	
110	110	0,110.0	0,110.0	2	2	4,081.0	4,081.0	

■ 산업시설용지 변경 사유서

도면	가구	위 치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번호	'''		
A8	A8	남상면 대산리 2421 일원	· 획지 변경 - 4개소 → 1개소 · 면적 변경 - 18,143.9㎡ → 18,589.9㎡ 증)446.0㎡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획지 개소 변경 송전철탑 이설에 따른 면적 변경

나)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가구	대 거(²)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면적(m²)	위 치	면적(m²)	1 117
합	계	8,051.6	-	8,051.6	
B1	B1	1,869.8	1	868.0	
DI	DI	1,009.0	2	1,001.8	
			1	737.3	
			2	1,015.9	획지내 필지
B2	B2	6,181.8	3	982.0	분할·합병 가능
DZ	D2	0,101.0	4	969.7	
			5	963.4	
			6	1,513.5	

다) 주차장 용지(변경없음)

도면	가구	대 거(²)	<u> </u>	· 기	비고
번호	번호	면적(m²)	위 치	면적(m²)	
합	계	8,051.6	-	3,125.6	-
주1	주1	1,869.8	-	1,345.5	-
주2	주2	6,181.8	_	1,780.1	-

라) 공원 용지(변경없음)

도면	가구	면적(m²)	ğ	기	비고	
번호	번호	[변석(M)	위 치	면적(m²)	비간	
합	합 계 12,792.0		- 12,792.0		-	
근	근	12,220.3	-	12,220.3	-	
공	공	571.7	-	571.7	-	

마) 저류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가구	면적(m²)	<u> Ş</u>	획 지				
번호	번호	년식(M) 	위 치	면적(m²)	비고			
합계		11,089.7	-	11,089.7				
저류1	저류1	8,271.6	_	8,271.6				
저류2	저류2	2,818.1	_	2,818.1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_	A1, A2	용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기장비 제조업(C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기장비 제조업(C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표준산업분류상 35114) 운수시설, 창고시설
		 건폐율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70%이하
		_ • •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m
_	A3, A4	용 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표준산업분류상 35114) 운수시설, 창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m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_	A5, A6 A7, A9	용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기장비 제조업(C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표준산업분류상 35114) 운수시설, 창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	• 70%이하
			• 150%이하
			• 4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m
_	A8	용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9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교육서비스업(P8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9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연구개발업(M7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표준산업분류상 35114) 운수시설, 창고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기 정 • 4층 이하 변 경 • 150m 이하(승강기 시험탑에 한하며, 그 외 용도는 4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m

■ 산업시설용지 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변경 내용	변경사유
-	A8	 허용용도 추가 : 교육서비스업(P85) 높이계획 변경 : 4층이하 → 150m이하 	·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승강기시험탑)에 따른 허용용도 변경 및 높이계획 변경

나)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 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B1, B2	용	 허용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하거나 층수가 3층을 초과하는 것과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운동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m

라. 공원조성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근린공원<mark>(변경</mark>)

를 총괄표

구	분	시설내용	부지면	[적(m²)	시설면	[적(m²)	비고	
	亡	기열대중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n 17.	
총	계		12,220.3	12,220.3	1,371.1	1,518.1	시설율:12.4% (법정40%이하)	
기반	시설	도로, 광장	1,311.3	1,206.3	1,311.3	1,206.3		
조경	조경시설 정자		18.3	18.3	18.3	18.3		
휴양/	시설	평의자 외 1종	13.5	13.5	13.5	13.5		
편익	시설	전망휴게소	28.0	28.0	28.0	28.0		
녹지	및	녹 지	10,849.2	10,702.2	-	-	녹지율:87.6% (법정60%이상)	
7]1	타	배 수 지	-	252.0	_	252.0	중복결정	

■ 시설조서

시설구분	번 호	시 설 명	부지면	[적(m²)	시설면	[적(m²)	비고
八包丁七	빈오	기설성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1 11.11.
	총계			12,220.3	1,371.1	1,518.1	
	ব	: 계	1,311.3	1,206.3	1,311.3	1,206.3	
		도로(소계)	878.3	858.3	878.3	858.3	
기반	가	광장(소계)	433.0	348.0	433.0	348.0	
시설	가-1	다목적광장	328.0	243.0	328.0	243.0	
	フト-2	진입광장	43.0	43.0	43.0	43.0	
	フ}-4	휴게광장	62.0	62.0	62.0	62.0	
조경	소 계		18.3	18.3	18.3	18.3	
시설	2	정자	18.3	18.3	18.3	18.3	
휴양	ব	소 계		13.5	13.5	13.5	
시설	4	연식의자	13.5	13.5	13.5	13.5	
편익	ব	: 계	28.0	28.0	28.0	28.0	
시설	다	전망휴게소	28.0	28.0	28.0	28.0	
	ব	: 계	10,849.2	10,954.2	-	252.0	
녹지 및 기타		녹 지	10,849.2	10,702.2	-	-	
		배수지	-	252.0	-	252.0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1	2.0	69.5	144.5	진입로	가-2광장	가-1광장	
변경	소로	3	1	2.0	61.7	124.5	진입로	가-2광장	가-1광장	
기정	소로	3	2	4.0	152.0	608.0	진입로	경계부	가-1광장	
기정	소로	3	3	2.0	63.0	125.8	연결로	소로3-2	가-4광장	

2) 소공원(변경없음)

총괄표

구 분	시 설 내 용	부지면적(㎡)	시설면적(m²)	비고
총 계		571.7	91.1	시설율:15.9% (법정20%이하)
기반시설	도 로	74.8	74.8	
조경시설	사각파고라	16.3	16.3	
녹지 및 기타	녹 지	480.6	-	녹지율:84.1% (법정60%이상)

■ 시설조서

시설구분	번 호	시 설 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비고		
	총 7	레	571.7	91.1			
기반		소 계	74.8	74.8			
시설			도로		74.8	74.8	
조경		소 계	16.3	16.3			
시설	1	사각파고라	16.3	16.3			
녹지 및		소 계	480.6	-			
기타		녹 지	480.6	_			

■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1	1.8	7.0	12.6	진입로	경계부	파고라	
기정	소로	3	2	1.8	16.4	29.6	연결로	파고라	녹지	
기정	소로	3	3	1.8	8.2	14.8	진입로	경계부	소로3-2	
기정	소로	3	4	1.0	8.9	8.9	연결로	소로3-2	소로3-2	
기정	소로	3	5	1.0	8.9	8.9	연결로	소로3-2	소로3-2	

15. 지정(개발계획) 구역계 좌표조서(생략:변경없음)

1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거창군청 미래전략과(055-940-336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합니다.(관련도서 게재생략). 끝.

거창군 고시 제2019 - 128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79, 80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거창군 고시 제1978-103호(1978.03.20.)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 소로 2-79, 80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19. 11. 14.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 개요

スモ		위	치		시	행	77	Ē	2		최 초	
종류	명 칭	습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 적 (m²)	시행 구간	결정일	비고
그시	도시계획도로 (소로2-79호선)	거창	가지	소 로	2	79	71	8	1.740	거창읍 가지리 215-8	경고 1978-103호	
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80호선)	거창	가지	소 로	2	80	140	8	1,740	~ 거창읍 가지리 223-1	(1978. 3. 20.)	

2. 사업 시행자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수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 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6개월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소로 2-79호선, 소로 2-80호선

일련	ارد الدي	ગો મો	7) D	지적	편입	소유자		소유권 권		비고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m²)	면적 (m²)	주소	성명	권리 명	권리 자	
합계	-	-	-	3,930	1,675					
1	거창읍 가지리	215-8	도	374	59		거창군			
2	"	248-1	전	272	272	경남 김해시 분성로	이*연 외1인			
3	"	246-11	전	93	93		거창군			
4	"	246-14	전	142	142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박*묵 외2인			
5	44	246-13	전	138	138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박*묵			
6	"	246-12	전	43	43		거창군			
7	"	245-1	전	12	12		거창군			
8	"	242-2	전	286	286		거창군			
		242-3	전	9	9	경남 거창읍 거열로	백*자			
		243-3	답	4	4		거창군			
9	"	243-4	답	98	98		거창군			
10	"	246-10	대	111	111		거창군			
11	44	247-1	과	267	267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정*철 외1인			
12	44	215-5	도	1,979	92		거창군			
13	"	226-1	전	24	24		거창군			
14	"	223-1	전	78	25		거창군			

5.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고시 제2019 - 129호

단지봉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규정 및 『농림축산 식품부 사업지챙서』에 의거 '단지봉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 승인하고.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거 창 군 수

- 1. 사 업 명: 단지봉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 2. 사업의 목적: 단지봉마을권역의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공간조성 등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단지봉마을권역 주민의 "삶의 질"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 **3.** 면 적: 3,835ha (농경지 405ha, 임약 3,233ha, 기타 197ha)
- 4. 사 업 구 역: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용암리, 박암리 일원
- 5. 가구 / 인구: 310호(농가 247호, 비농가 63호), 인구 564명
- 6. 사 업 비: 4.400백만원(국비 3.080, 도비 396, 군비 924)
 - 당초 : 자부담 87백만원정도(사업비 확정 후 정산)
 - 변경 : 자부담 110백만원정도(사업비 확정 후 정산)

7. 사 업 기 간

- 당초 : 2014. 1. ~ 2019. 6. 30.
- 변경: 2014. 1. ~ 2019. 12. 20.
- 8. 시 행 자: 거창군수(위탁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 9. 주요사업개요(변경)
 - 기초생활기반확충 : 주민행복복지센터, 행복마을회관, 행복마을안길정비 등
 - 주민행복복지센터 <mark>변경</mark> : 건축, 조경, 설비 등 물량 증
 - 행복마을경관정비 변경 : 하개금마을 경관정비 건설과 도로담당 도로 확포장 물량중복 삭제
 - 지역소득증대사업 : 농산물가공 및 선별장
 - 소득사업 변경 : 선별장·저온저장고 → 배추절임시설로 변경
 - 지역경관개선사업 : 행복쉼터, 마을지붕정비, 마을경관정비, 행복담은 편지 함. 권역안내판 등
 - 지역역량강화 사업: 교육, 선진지견학, 컨설팅, 홍보, 마을경영지원 등

10. 세부사업계획이나 상세한 내용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촌 개발담당(☎940-8273)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거창군 고시 제2019-130호

거창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창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골프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하고, 같은 법 제88조 6항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거 창 군 수

1. 거창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경미한 사항)

가. 체육시설(변경)

1) 골프장(변경)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m²)		최초	비고
丁亚	번호	기결정	세분	T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포
변경	1	체육시설	골프장	신원면 덕산리 산13번지 일원	1,843,303	감)25,749	1,817,554	경상남도 고시 제2007-92호 (2007.03.29)	경미한 변경

■ 골프장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68	소로2-292	I-도로폭위 벼 <i>경</i>	·군계획시설(도로)과 지역특화발전 규제지역에 중 복으로 결정되어 현장여건에 맞추어 도로 폭원 변경

2. 거창군계획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 명 칭 : 거창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일명:감악산골프장)

다. 사업규모(변경)

○ 당 초 : 1,843,303 m²

○ 변 경: 1,817,554㎡ (감 25,749㎡)

○ 토지이용계획

	분		면	적(m²)		구/	구성비		
	亡	기정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비고	
	합 계	1,843,303	감)	25,749	1,817,554	100.0	100.0		
	체육시설 용지	429,269	감)	40,244	389,025	23.3	21.4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건축시설 용지	12,800	감)	4,260	8,540	0.7	0.5		
	공공시설 용지	98,574	감)	4,256	94,318	5.3	5.2		
	녹지 용지	1,302,660	증)	23,011	1,325,671	70.7	72.9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 성 명 : 코리아신탁(주) 대표이사 최익종

마. 사업기간(변경)

○ 당 초 : 2015. 04. 23. ~ 2019. 06. 30. ○ 변 경 : 2015. 04. 23. ~ 2019.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3. 관계도서 : 실음생략[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비치]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	.적(m²)	편입면	.적(m²)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번호	그세시	기킨	시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미끄
합계				2,669,183	1,843,303	1,843,303	1,817,554					
1	신원면 덕산리	231	답	255	255	255	25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2. 근 저 당	3. 주식회사 4. 국민은행	
2	신원면 덕산리	255	임	205	205	205	205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충(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5	7. 주식회사 8. 국민은행	
3	신원면 덕산리	256	임	89	89	89	89	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충(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10. 근 저 당	11. 주식회사 12. 국민은행	
4	신원면 덕산리	257	임	89	89	89	89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충(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14. 근 저 당	15. 주식회사 16. 국민은행	
5	신원면 덕산리	374	답	2,172	2,172	2,172	2,172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충(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18. 근 저 당	19. 주식회사 20. 국민은행	
6	신원면 덕산리	377	임	89	89	89	89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충(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22. 근 저 당	23. 주식회사 24. 국민은행	
7	신원면 덕산리	378	답	873	873	873	873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충(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26. 근 저 당	27. 주식회사 28. 국민은행	
8	신원면 덕산리	379	답	29. 231	30. 231	31. 231	32. 231	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34. 근 저 당	35. 주식회사 36. 국민은행	

					1		T					
9	신원면 덕산리	380	답	37. 423	38. 423	39. 423	40. 423	4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42. 근 저 당	43. 주식회사 44. 국민은행	
10	신원면 덕산리	391	답	45. 833	46. 833	47. 833	48. 833	4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50. 근 저 당	51. 주식회사 52. 국민은행	
11	신원면 덕산리	440	임	53. 1,236	54. 1,236	55. 1,236	56. 1,236	5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58. 근 저 당	59. 주식회사 60. 국민은행	
12	신원면 덕산리	산13	임	61. 2,656, 341	62. 1,830, 461	63. 1,830, 461	64. 1,794, 090	6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충(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66. 근 저 당	67. 주식회사 68. 국민은행	
13	신원면 덕산리	산13-12	임	69	70	71	72. 750	73.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역사로3길 5, 1301호(검사동, 동촌모노스)	거창씨씨 개발유한회사		75. 주식회사 76. 참저축은 행	
14	신원면 덕산리	산13-13	임	77. –	78	79. –	80. 14,037	81.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역사로3길 5, 1301호(검사동, 동촌모노스)	거창씨씨 개발유한회사		83. 주식회사 84. 참저축은 행	
15	신원면 덕산리	산52	임	85. 4,165	86. 4,165	87. 4,165	88	8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14	수원백씨농계 공파종중 (대표자:백정석)	90.	91.	
16	신원면 덕산리	산59	임	92. 2,182	93. 2,182	94. 2,182	95. 2,182	9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97. 근 저 당	98. 주식회사 99. 국민은행	

거창군 고시 제2019 - 131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 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9. 11. 13.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5길 45 등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O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ᄌᆋᄌᄾ	C 크 더 조 스	고	시 일		ul ¬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도로명주소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33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빼재로 1705-278	2009-12-28	2019-11-13	고제면에 위치한 빼재라는 지명을 반영한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85-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6길 56-15	2009-04-01	2019-11-13	거열로의 시작점에서 부터 여섯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완대리 504-4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도동길 101	2009-04-01	2019-11-13	300여년 전 영천이씨 죽헌 이영신이 단종 복위를 위한 세조 때 사화를 피하여 옮겨오므로써 만들어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990-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5길 45	2009-04-01	2019-11-13	마을 북동쪽 모래둑걸 남쪽에서 아월천 서쪽일때까지의 논들 이름이 반영된 다섯번째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산48-3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422-207	2009-04-01	2019-11-13	장군봉이라는 지명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686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토점길 88	2009-04-01	2019-11-13	1670년대에 옹기를 굽는 가마가 생겨서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7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83-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승강기길 93	2012-05-22	2019-11-13	승강기산업공장이 위치하는 길을 반영	

⊙거창군 공고 제2019 - 1416호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96호선,주차장4호)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103호('95.5.12)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2-291호선 , 주차장4호)의 사업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3일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종류	시설명	위	え]			시행	규모			시행위치		최초	비
	ठेग	시설명	읔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폭	면적	시점	종점	결정일	고
•	군 계획	교통시설 (주차장 4호)	가조	마상			4	57	26	2,05	가조면 수월리 446-3	가조면 수월리 449-8	경고103 호 ('95.5.12)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196호선)	가조	마상	소로	2	196	88.5	8	750	가조면 수월리 449-8	가조면 마상리 9	경고103 호 ('95.5.12)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사업명: 가조 마상지구 주자창 및 도시계획도로(소로2-196호선) 개설공사

3. 열람기간: 신문개제 익일로부터 14일간

4.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준공예정일 : 2020. 12. 31.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및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붙임)

	_	<i>/</i> , _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소유	자	소유 이외의	우권 권리	비고
면오					(m²)	(m²)	주 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가조면				7,23	2,80					
H'"	717.0				1	0					
1	수월리	446	- 8	답	735	17		거창군			
2	수월리	446	- 7	답	552	8		거창군			
3	수월리	446	- 2	답	690	383		유영숙			
4	수월리	446	- 3	답	907	896		거창군			
5	수월리	449	- 8	답	1,311	1,038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425	정극진			
6	마상리	861	- 28	도	1,039	30		국 (국토교통부)			
7	마상리	9		답	1,997	428		김옥이 등 4명			

- ※ 관계도면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6. 의견제출 및 열람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참조: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주소: 50132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이나 전화(055-940-3592, 3595), FAX(055-940-3579), Email : chanung@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끝".

거창군 공고 제2019-1419호

노인보호구역 지정(신규)에 따른 행정예고

거창군 관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19. 11. 13.

거 창 군 수

1. 목 적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제면 고제경로당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지정.

- 2. 공고방법: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게재
-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9. 11. 13. ~ 2019. 12. 04. (21일간)
- 4. 지정위치 : 별첨1 위치도 참조
-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붙임2)를 거창군 경제교통과(교통담당)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기한 : 2019. 11. 13. ~ 2019. 12. 04.
-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다. 제출서식 : 별첨2 서식참조
- 라. 문의 및 제출처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 전 화: (055)940-3388 / FAX: (055)940-3349

마.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의	견	제	출	서
1.	행 정 (예고 내용	노인트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	정예고
2. !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5	의	견					
4	기	타					
	행정절 불합니[제1항(제31조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2019년	월	일	
			의견 제를	출인 주 <i>소</i>	<u>`</u> :		
							(전화 :)
				성명	d :		(서명 또는)
거칭	군수	귀하					
비고	2. 증	재란이 부족 :거자료 등을 의견 제출괴 :께 기재해 주	첨부하실 사관련하(실 수 있: 여 문서를	습니다.		있습니다. =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노인보호구역 지정 위치



거창군 공고 제2019 - 1421호

남상 무촌지구 자동염수분사장치 CCTV 설치 행정예고

도로의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남상 무촌지구 자동염수분사장치 운용 및 관리용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3일

거 창 군 수

- 1. 행정예고명 : 남상 무촌지구 자동염수분사장치 CCTV 설치
- 2. 시 행 청 : 경상남도 거창군청
- 3. 행정예고기간 : 2019. 11. 13. ~ 2019. 12. 4.(21일간)
- 4. 의견제출기간 : 2019. 11. 13. ~ 2019. 12. 4.(21일간)
- 5. 행정예고(공고)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 6.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주요내용

○ 설치목적 : 강설로 인한 교통사고 및 제설 취약구간에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관리용 카메라 설치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녹화

○ 설치위치

구 축 장 소	설치 대수	촬영 시간	운 영 기 관	비고
경남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산312-2번지(군도16호선)	1	24시간	거창군 경제산업국 건설과 (도로담당)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제출방법

○ 우편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

○ 팩스: 055-940-3529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문 의 처 :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 도로담당(☎ 055-940-3557)

		의	견	제	출	서			
행정예고명		면 무촌 행정예				자동염수분/ 출서	나장치 C	CTV	
의견 제출자	성 (개인/단	-				생년월일			
의신 세찰자	주 2	2				전화번호			
설치예정	위치				의견/	제출 내용			
남상 무촌지구	자동염수		설치에 같이 의 ²				설치와 관련	<u></u> 하여 5	위와
		20)19년	Q _E]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기창군수	귀하								

거창군 공고 제2019 - 1422호

『거창 정장마을(농도31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거창 정장마을(농도31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3일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거창 정장마을(농도31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나. 위 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일원

다. 사 업 내 용 : 도로확포장 L=384m. B=5~8m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건설과 도로담당)

2. 보상내용

가. 토 지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일원(붙임참조)

나. 지 장 물 : 편입토지에 지상에 있는 물건 일체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거창군청 건설과(도로담당)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거창군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 ⇒ 입법/공고/고시)에서 토지는 확인 가능함.

3. 열람기간 · 장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 055-940-3557)

다.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4.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수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나. 보상시기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 다. 보상방법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창군청 건설과(도로담당)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로 갈음하며, 이해관계인은 권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등 권리권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6. 기타사항

-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거창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도로담당(☎055-940-35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조서(토지명세)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이외의 린	비고
면오	_ " .		当	(m²)	(m²)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42,005	4,382					
1	거창읍 정장리	781-4	대	282	53		유덕자, 장정일, 손정규			
2	££	782-4	전	241	20	진주시 초전동 260	진주원예농업 협동조합			
3	££	783-3	대	66	1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 장3길 11	양자희			
4	tt.	1163	도	165	148		국(건설부)			
5	εε	783-4	대	6	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 장3길 11	양자희			
6	££	783-1	대	186	4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 장3길 11	양자희			
7	££	산150	도	285	151		국(건설부)			
8	cc	1139-2 8	천	4,692	517		국(건설부)			
9	"	1030	구	7,865	215		국(농림수산부)			
10	cc .	산40-1	임	13,230	1770	거창읍 정장리 899	헌부공장씨종 중			
11	tt.	992-39	임	2,245	525	거창읍 정장리 793	신정숙			
12	tt.	992-37	전	5,589	55	거창읍 정장리 793	신정숙			
13	tt.	992-47	전	52	52		경상남도			
14	cc .	산 41-10	구	62	62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포일동)	한국농어촌공 사			
15	ii.	1185	도	1,020	10		국(건설부)			
16	££	1186	구	2,117	216		국(농수산부)			
17	££	산41-8	구	646	32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포일동)	한국농어촌공 사			
18	££	산41-7	구	1,669	401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포일동)	한국농어촌공 사			
19	í í	산 41-13	임	222	85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포일동)	한국농어촌공 사			
20	í.	1168	구	1,365	3		국(농수산부)			

『거창 정장마을(농도31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농어촌도로의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예정인 『거창 정장마을(농도31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제9조 제5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자, 이해관계가 있는 자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3일

거 창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로 확포장

- 명 칭 : 거창 정장마을(농도31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상림리 64-1)

- 성 명 : 거창군수

3. 사업예정지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81-4번지 일원

4. 사업의 규모 : 도로 확포장 L=384m. B=5~8m

5. 사업의 목적 : 기존 농도가 협소하여 이용자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어 확포장 시행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별도첨부"

7. 열람기가 및 장소

- 장 소 : 거창군청 건설과(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층)

- 기 간: 2019. 11. 13 ~ 2019. 11. 27.

- 8. 주민의견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건설과(055-940-3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및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진	지적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년 이외의	비고
면오	_ " .	,_	목	(m²)	(m²)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42,005	4,382					
1	거창읍 정장리	781-4	대	282	53		유덕자, 장정일, 손정규			
2	"	782-4	전	241	20	진주시 초전동 260	진주원예농업 협동조합			
3	66	783-3	대	66	1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 장3길 11	양자희			
4	"	1163	도	165	148		 국(건설부)			
5	cc .	783-4	대	6	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 장3길 11	양자희			
6	"	783-1	대	186	4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 장3길 11	양자희			
7	"	산150	도	285	151		 국(건설부)			
8	"	1139-2 8	천	4,692	517		국(건설부)			
9	66	1030	구	7,865	215		국(농림수산부)			
10	cc	산40-1	임	13,230	1770	거창읍 정장리 899	헌부공장씨종 중			
11	66	992-39	임	2,245	525	거창읍 정장리 793	신정숙			
12	66	992-37	전	5,589	55	거창읍 정장리 793	신정숙			
13	66	992-47	전	52	52		경상남도			
14	"	산 41-10	구	62	62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포일동)	한국농어촌공 사			
15	££	1185	도	1,020	10		국(건설부)			
16	66	1186	구	2,117	216		국(농수산부)			
17	"	산41-8	구	646	32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포일동)	한국농어촌공 사			
18	"	산41-7	구	1,669	401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포일동)	한국농어촌공 사			
19	cc .	산 41-13	임	222	85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포일동)	한국농어촌공 사			
20	££	1168	구	1,365	3		국(농수산부)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19 - 27호

거창 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수영강사) 채용시험 공고

거창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수영강사)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 11. 11. 거 창 군 수 (직인생략)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신분	채용분야	채용 인원	근무장소	업무내용	비고
기간제 근로자	수영강사	1명	체육시설사업소	○수영 강습 ○수영장 안전관리 ○강습프로그램 발굴 등	

2. 근무조건

O 신 분:기간제 근로자

○ 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 9개월

※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해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O 급 여

- 기본급 : 일급 76,800원×근무일수

- 각종 수당 : 주차, 월차, 연차, 휴일근로수당, 강사수당, 안전관리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외부특강 수당 등

※ 연봉 : 44,000천원 정도(외부 특강 수업 별도)

O 근무내용

근무 요일	근무 내용	근무 시간	비고
화요일 ~ 금요일	수영강습 (안전근무 포함)	- 오전조 06:00 ~ 15:00 - 오후조 13:00 ~ 22:00	- 4개월마다 근무조 변경 근무
토요일 ~ 일요일	당직근무 (안전근무 포함)	n	- 토,일 근무 시 근무조 편성 후 순번대로 근무 실시 (월 4회 정도 근무)

※ 매주 월요일 휴관(휴무)

O 후생복지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O 근무장소 : 거창국민체육센터 수영장

3.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기준

1) 다음의 자격증 소지자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과 수상인명구조 관련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자

-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2급 이상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수상인명구조 관련 자격증(수상구조사 또는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
 - 수상구조사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2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수상인명구조요원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수상레저 관련 기관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인명 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자

<해양경찰청장 지정 수상레저 기관(단체) 현황>

대한적십자사	(재)한국YMCA전국연맹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사)대한인명구조협회	(사)한국해양구조협회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사)한국구조연합회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사)대한수중핀수영협회
(사)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대한안전연합
(사)수상인명구조단		

- 2)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3) 성 별 : 남녀 구분 없음(단, 남자의 경우 최종 면접 시험일 기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 4) 거 주 지 : 제한 없음
- 나.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1) 거창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1조(결격사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 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응시자 우대사항

- O 공공기관 수영강사 근무 경력자 우대
- O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5. 응시원서 교부(접수) 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공 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0 1	C(1111	합격자발표	일 시	장 소	발표
2019. 11. 11.	2019. 11. 20.	2019. 11. 22.(금)	2019. 11. 25.(월)	거창군	9010 11 97(み)
~ 11. 21.	~ 11. 21.	2019. 11. 22.(' 11)	14:00	체육시설사업소	2019. 11. 27.(今)

- 가. 접 수 처 : 거창국민체육센터 1층 안내데스크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09:00 ~ 18:00) /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 다. 합격자 발표 및 근무개시일
 - O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추가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 ※ 모든 제출서류는 채용공고 시작일 이후 발급받아 제출한 서류에 한 해 인정함.

마.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사.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이력사항 기재, 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1부

7. 기타사항

-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나.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 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국민체육센터담당(25055 940 877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접~	응시분	야	국	민체	육센터 -	수영강시	-					
21 = 3	(한글)				주민등	록					_	사진 (1)
성명	(한자)				번	호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 ·							전화 :					(3cm×4cm)
주소					HP:							
	부터	}		까지		학	교 명			전공학	학과	학위명
학												
격												
4												
가	관계		성	명	연령		학력			직업		
족												
사						+						
항												
자격	취득일지	-	종	별		ĩ	군별		계급	복무7	기간	미필사유
면허					병역							
	7]	<u> </u> 간		ح (ح	 장 명		 직	<u>위</u>			<u></u> 담	 당 업 무
주 요	/1	<u> </u>		4 1	8 6		<u>~~</u>	<u> 1</u>			님	8 월 T
경												
잳												
귀급	군의 국민	체육	센터		`		,	시험	에 응시	하고자	원사	를 제출합니다.
2019년 7월 일 제출인											(4)	
	_						저	줄	- 인			(인)
	거 경	<u> </u>	근	수 귀	<u></u> 하							

	성	한글		※응시번호		
응	명	한자		응시분야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사 진 (2)
시	주민	등록번호		_		위와 동일사진
丑			2019년 거 창	월 일 군 수	<u>≤</u>	(3cm×4cm)
			Ý I O	ا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요령》

- ① 응시원서 : 응시원서 기재사항은 자필로 작성 제출
- ② 응시분야: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기재
- ③ 주 소 :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④ 학 력 : 대학교 이하 란은 모든 응시자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학원 졸업·재학·
 - 수료・중퇴인 응시자는 출신대학 및 대학원 모두를 기재
- ⑤ 성 명:정자로 기재
- ⑥ 주민등록번호 : 정자로 기재
 - ※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i	C	<u> </u>			<u> </u>	<u></u>	<u>ተ</u>	=			
人	나 진	!	성	한 글					생 년	<u>년</u> 월 일		<u>ا</u>	1	월		일
			명	한 자					주민	등록번호				_		
(3c	cm x 4c	m)	주	소				•			•					
			연혁	락처	집 :	()				휴대전화 :					
학		기	간		Š	탁		교		명	8	<u> </u>	공	분	0‡	
			~		고등학교(졸·중퇴)											
력			~		대 학 교(졸			교(졸	· 중퇴)						전공	
			~		대학			대 학	원(졸	· 중퇴)						전공
	기			간	2	· 두	<u> </u>	 	직	위	2	1	무	내	용	
경			~													
력	~															
	~															
	~															
자격	취	득	년 월	일	자	격	•	면	허	명	٨l		핟	ļ	처	
및		년	월	일												
면허																
된어																
병	복	무	기	간	군	별	계	급	병	과	0	필 드	E는	면 기	레 사 두	7
역			~													
신 장		СТ	체 중	kg	취					특 기		I		교		
가	관 계	성	명	연 령	₫	함 르	l 1		직	업		근	무	처	직	위
~ 족																
사																
항																
				OI AII	71 TU =	+1 11 -			. E =	יוטו טוא	<u> </u>					
				위에	기새	한 사용	왕은 /	사실」	사 들은	팀이 없습	하니나.					
											201	9 년	율	1	일	
											성	명 :			(Ð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연령)	채용등급	채용분야
	(세)	기간제근로자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2019	
작성자 :	(서명・인)

O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성장과정, 좌우명, 학교생활, 응시분야에 대한 경력 및 실적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
- 또한, 응모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 향후계획, 발전방안 등을 기술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반드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 3.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19년 월 일

성명: (서명)